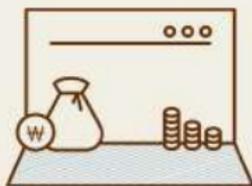


true fri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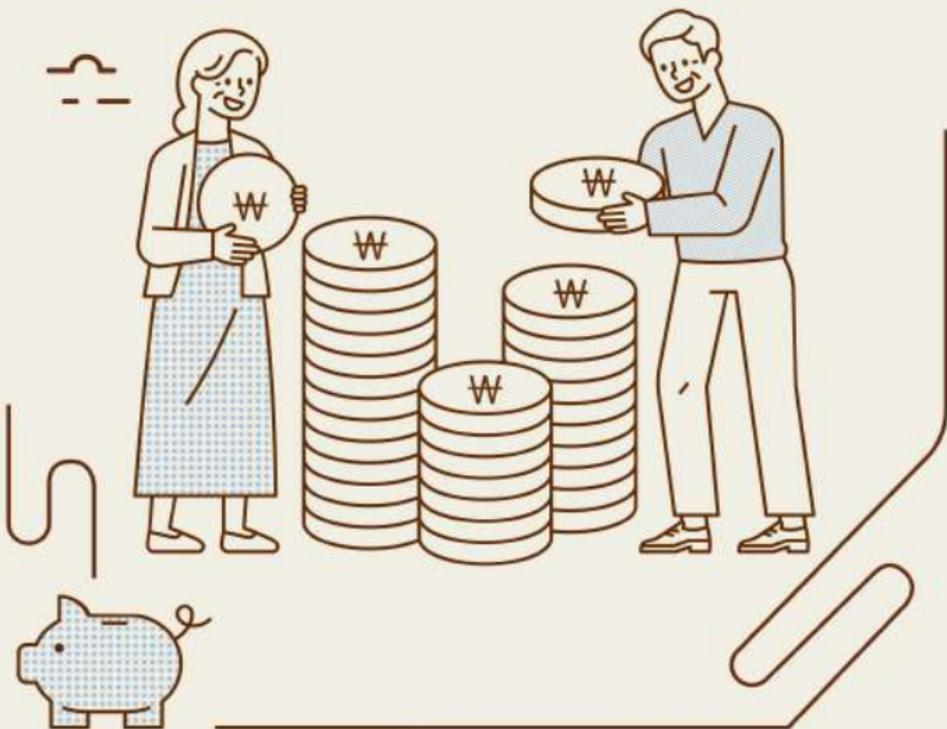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1783호(2025-10-15~2026-10-14)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



true**友**riend 한국투자 증권



행복한 노후를 꿈꾼다면, 당신의 truefriend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법정 의무사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교육안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퇴직연금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추가적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33조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

제도일반 안내(DB·DC·기업형IRP)	4
DB형 퇴직연금 안내	22
DC형·기업형IRP 퇴직연금 안내	25



목차



DB·DC·기업형 IRP 공통
제도일반 안내

I. 노후설계의 중요성	5
II.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6
III. 퇴직연금의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8
IV. 퇴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13
V.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이해	15
VI.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18
VII.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처리 방법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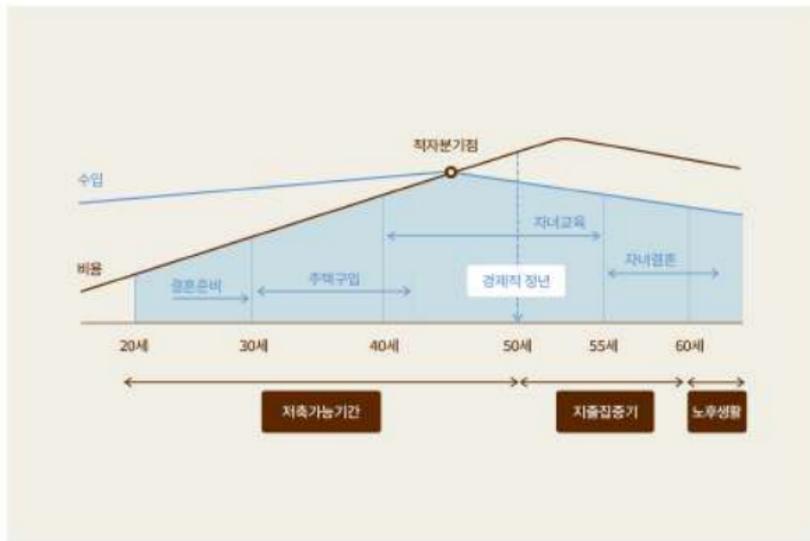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 관리 전략

생애주기/연령대별 다양한 재무목표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수입/지출 계획 세우기



연령별 은퇴준비 계획



- ~30세
 투자 종자돈 모으기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해 종자돈 불리기
- ~50세
 분산투자과 장기투자로 자산 키우기
 지출 증가 시기로 목적별/기간별 자금마련 필요
- ~100세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투자자산의 연금화 필요

3층 연금으로 준비하는 노후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개인연금으로는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3층 보장 연금체계



☑ 월 노후 필요 생활비 수준

참고

(단위: 만원)

구분	부부 기준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	217.1	136.1
적정 생활비	296.9	192.1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_2023년]

노후 필요자금 진단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재무설계 > 노후 재무설계 에서 노후 필요자금 진단이 가능합니다.

노후 필요자금 진단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성별	<input type="radio"/> 남자 <input checked="" type="radio"/> 여자	나이(만)	<input type="text"/> 세
은퇴 예상연령(만)	<input type="text"/> 세	월 생활비 필요액 (현재소득)	<input type="text"/> 천원

[노후 필요자금 계산](#)

내 연금조회하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에서 총 연금자산 조회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의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퇴직연금제도란?

주체	기업이
목적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적립방법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방법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지급방법	근로자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손익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



DB형 퇴직급여 예시

(3년 근속 시, 임금상승률 2% 가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적립금은 근로자가 운용하고, 운용손익도 근로자에 귀속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DC형 퇴직급여 예시

(3년 근속 시, 임금상승률 2% 가정)



(기업형) 개인형퇴직 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회사에 한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IRP를 설정한 경우, 규약 신고의무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형 IRP의 운용방법은 DC 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구분	(법정)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비용부담 주체	회사		회사 (임직원 추가납입 가능)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 부담 변동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
적립금 운용권한 및 책임	회사		근로자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까지 가능	
중도인출	제한적 중간정산 가능	불가능	제한적 가능
퇴직급여수준	근로시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근속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급여형태	IRP로 이전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임금상승률과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p>DB제도가 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 ·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 높은 하위직급 근로자 	 <p>DC제도가 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이 한계에 다다른 고위직급 근로자 · 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낮은 근로자
--	---



알아두기

직급이 낮은 입사 초기의 근로자는 DB를 선택하고, 승진가능성과 기업의 임금정책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퇴직급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할 경우 DC로 전환하여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도인출 하는 경우,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DC만)

※ DB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담보대출만 가능한 사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 담보대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담보제공이 가능하나 예상 수급액 변경 등 실질적인 담보인정이 어려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업무처리 절차



해당 사유별 구비서류 예시^{주1)}

주택 구입시/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시

- 주민등록등본(초본)
- 등기부등본
- 재산세과세증명서
- 매매계약서(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중도금 지급영수증(이체내역서 등)

입원 요양시

- 가족관계서류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진단서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의료비 지출 서류
- 임금총액 증빙(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시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 법원 파산 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 자세한 업무처리 절차는 퇴직연금 상담센터(1588-8844)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경조금, 상병위로금, 공로보상금 등)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등) · 복리후생적 금품 (차량유지비, 장학금, 보험보조금, 저축장려금, 현물급식 등) ·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영성과배분금
--------------	---

※ 단,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은 회사 내부 규정 및 지급 실태에 비추어 최선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임금의 구분

통상임금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평균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 사유 발생일 전일부터 3개월 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 · DB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함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



퇴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급여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요건
연금	- 만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개인형IRP에서 가입자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 후 수령 가능)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권의 보호

참고

1.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1항)
2.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한도를 두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절차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의무이전 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의 급여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RP 설정 및 가입

근로자는 금융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2

퇴직신청

근로자는 직장 내 퇴직연금담당자에게 퇴직신청합니다. (IRP 통장 사본 첨부)



3

퇴직통보

퇴직연금담당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근로자 퇴직 통보 후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DB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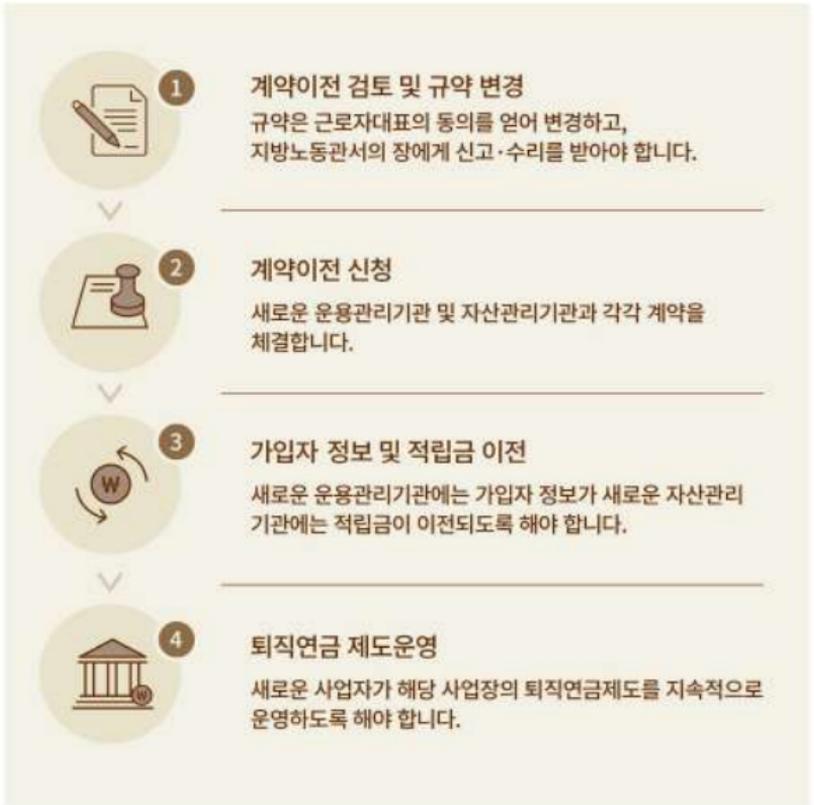
4

퇴직연금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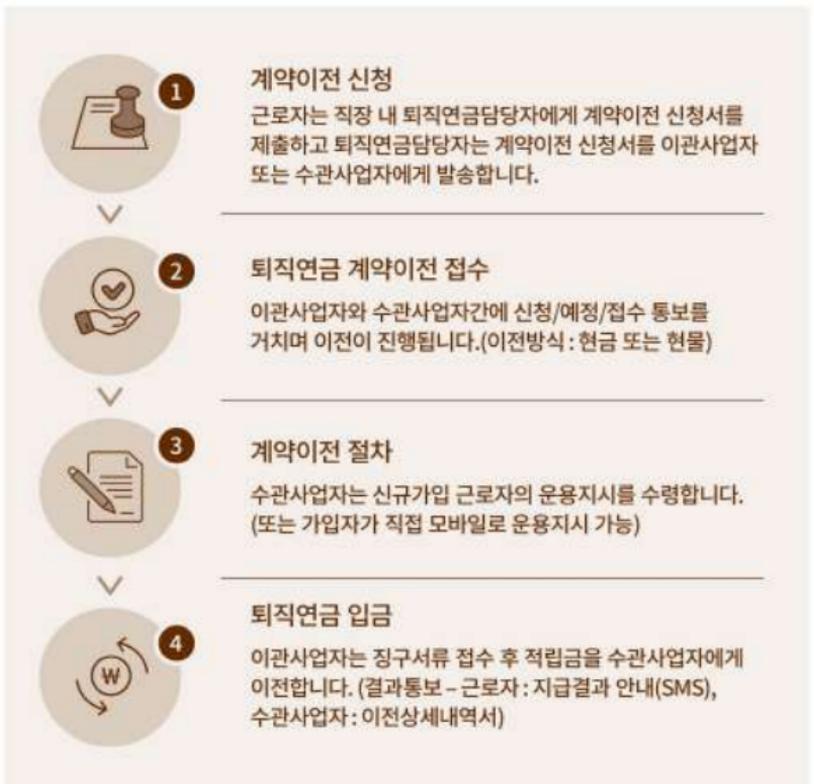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 세전 퇴직급여를 입금합니다

※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한합니다

DB·DC 법인의 계약이전 절차



DC 가입자의 계약이전 절차



퇴직연금 현물(실물)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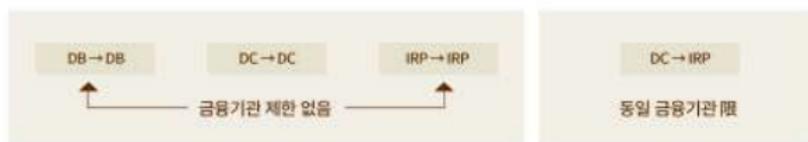
현물(실물)이전이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간 금융기관 변경 시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운용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



동일한 제도 간 이전이란

이관·수관 받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DC제도의 퇴직금을 IRP로 현물이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기관만 가능



현물(실물)이전 대상 상품

현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간 현물이전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이전 할 수 있음

• 가능 상품

구분	상품 유형
원리금보장형 (원금과 이자 보장)	정기예금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이율보증형보험 (보험사)
	ELB/DLB (증권사)
실적배당형 (투자상품)	펀드(MMF 제외), ETF, 채권 등

• 불가능 상품

구분	상품 유형
원리금보장형 (원금과 이자 보장)	RP (증권사)
	금리연동형보험 (보험사)
	발행어음 정기예금 (증권사)
실적배당형상품 (투자상품)	디폴트옵션, 리츠, 만기매칭형펀드 등

※ 현물이전 불가 상품은 매도되어 현금 상태로 이전

현물(실물)이전 신청 방법

한투앱, 영업점 방문을 통해 이전 신청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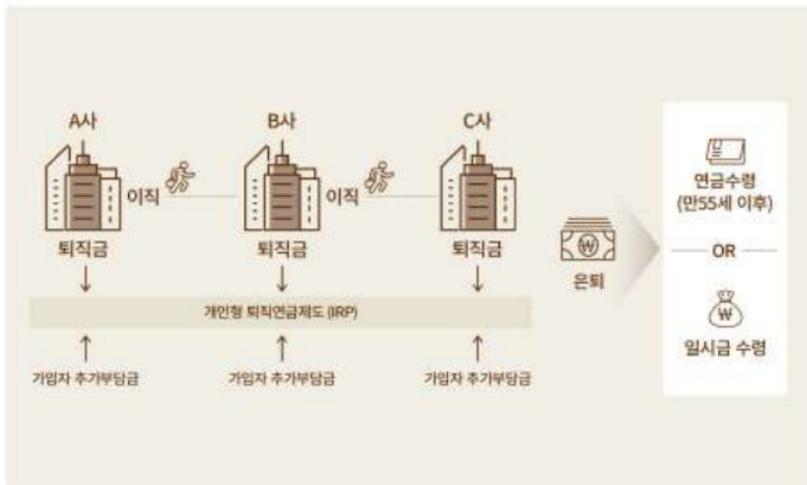
한투App>연금>퇴직연금>가입/이전>타사RP가져오기(현물·현금)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이해 —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로, 퇴직 이전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이전해야 합니다.

참고 (퇴직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2022.04.14부터 시행)

IRP 의무이전 예외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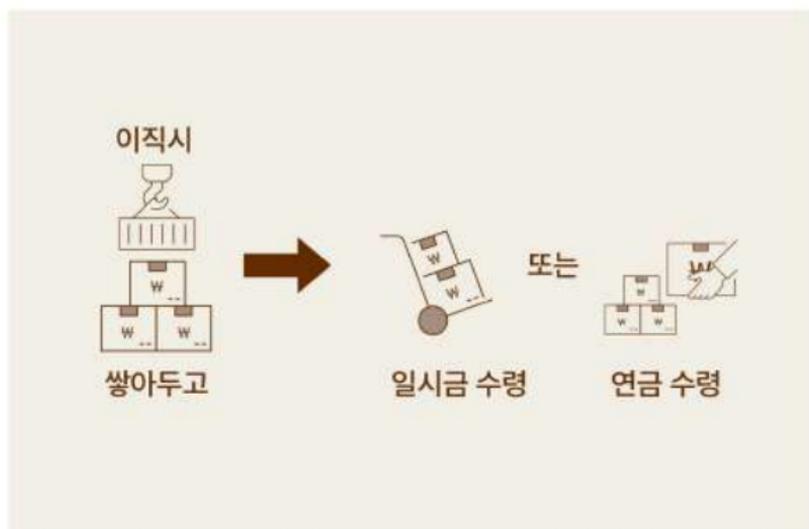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근퇴법에 따라 담보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이전 예외금액은 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활용

IRP를 통해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금 만들기

여러 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IRP에 쌓아두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필요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되면,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요건

참고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IRP에 입금되는 경우

절세 효과

IRP에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전 금융기관 DC/IRP 가입자부담금, 연금저축 계좌 합산)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최대 1억원) 연금 추가 납입 가능
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연600만 원, 퇴직연금 연900만 원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납입시 세액공제한도 예시

퇴직연금 납입	연금저축 납입	최대 세액공제 금액
900만 원	0원	9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0원	900만 원	6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구분에 따른 세액 공제 예시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세액공제한도 (ISA 만기 전환 포함)	900만 원 (1,2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13.2%
최대절세금액 (ISA 만기 전환 포함)	1,485,000원 (1,980,000원)	1,188,000원 (1,584,000원)

※ ISA 만기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ISA 만기 전환 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시(납입한 해만 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

편리한 적립금 운용

IRP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중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내 투자가능상품

원리금보장형 상품	정기예금, RP, 원리금보장형 ELB, 발행어음 등
실적배당형 상품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 상장리츠, ETF 등

※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안정적인 금융기관 또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주식·펀드 등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집니다.

연금 외 수령(일시금)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소득 원천 및 인출 순서

일시금 원천 및 인출순서			
구분	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 ② 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 운용수익
세율	과세제외	퇴직소득세 100%	16.5% *부득이한 사유 시 (연금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15일 이상 입원 또는 치료 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천재지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또는 파산,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포함 시, 5년 미경과 시에도 가능)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 원천 및 인출 순서

연금 원천 및 인출순서			
구분	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 ② 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 운용수익 ^{주)}
세율	과세제외	연금수령시점 10년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시점 10년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만 70세 미만 : 5.5% 만 80세 미만 : 4.4% 만 80세 이상 : 3.3%

※ 운용수익^{주)}: 가입자부담금 운용수익 + 퇴직소득 운용수익

※ ③은 연금소득 합산하여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개시일(개시 이후는 매년 1월 1일) 평가금액}}{(\text{11-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함

- 단,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는 6년차 적용 (2013년 3월 1일 전에 DB에 납입한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전액 연금소득으로 인정

퇴직소득세의 계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소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근속연수 공제^{주1)}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100만 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 차등공제^{주2)}

환산급여	차등공제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소득세율^{주3)}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6.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6.4%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8.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41.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6.2%
10억 원 초과	49.5%

※지방소득세 포함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처리 방법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 또는 폐지된 이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 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1 중단 사유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제도 운영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의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중단 효과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및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의 업무는 이행되지 않음
-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 유지, 적립금 운용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
- 중단된 기간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다시 적용됨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1 폐지 사유

사용자가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2 폐지 효과

- 제도 폐지로 지급되는 급여는 IRP로 지급해야 함
- 급여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간주

기업도산 시 업무처리절차

참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퇴직연금지급 청구가 어려울 경우 당사 퇴직연금 상담센터(1588-8844)를 통해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산
사유 발생

>

구비서류 준비^{*)} 후
당사 업무팀으로
서류 발송

>

상품 매도 후
적립금 지급

구비서류 예시

- 신분증
- 퇴직급여 지급청구서(당사양식)
- IRP(개인형퇴직연금) 통장사본 또는 입출식통장사본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장의 폐업·도산 사실확인서(홈택스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체당금 사실확인통지서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지급 신청방법

참고

미청구 퇴직연금(퇴직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이란?

회사의 갑작스러운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방법

어카운드인포 : 해당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일괄 조회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방법

당사 모바일 앱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당사 직원이 유선으로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안내

모바일

한투App>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관리>미청구퇴직금 신청



퇴직연금안내서

DB형 퇴직연금 안내



목차

I. DB형 적립금 운용현황 안내	23
II.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24

DB형 적립금 운용현황 안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연간 1회 이상 운용현황보고서와 법정가입자교육 운영상황안내서를 귀사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법정가입자교육 운영상황안내서 포함 내용

표준급여액	사업장(또는 회사)의 평균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최근 3년 간 부담금 납입 현황	부담금 납입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사업장(또는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최근 3년간 납입한 부담금 납입내역을 산출)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직전사업년도 말 기준)	소속회사의 퇴직연금 적립현황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건전한 연금재정 운용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 당사에서는 DB가입업체의 재정검증결과를 분석하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운영상황안내서 예시

표준급여액 (단위:원, %)

평균근속기간	평균임금	표준급여액

최근 3년 간 부담금 납입 현황 (단위:원, %)

납입연차	납입기간	부담금납입액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단위:원, %)

기준일자	기준책임준비금		최소적립금	적립금액	적립비율
	계속	비계속			
20xx-12-31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MAX (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최소적립금 ① 2012년 7월 26일~2013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② 2014년~2015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2016년~2017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④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

*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재정검증이란

- 재정검증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DB형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사업연도 종료시마다,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검증 적립 부족에 따른 사후조치

-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 총액이 법정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합니다. 미해소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재정검증 결과 구분 및 조치사항



* 기준책임준비금=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X 최소적립비율

* 부족비율 = 최소적립비율 - 적립비율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DC형·기업형 IRP

퇴직연금 안내

목차

I.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안내	26
II. 안정적 투자 원칙	27
III.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하는 상품 안내	28
IV. 운용방법별 수수료 체계	31
V. 표준형 DC 안내	32
VI. 온라인서비스 이용방법	33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안내

부담금 납입현황

DC, 기업형RP의 경우 가입자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부담금 확인 방법



매년 1회 이상 발송
되는(이메일/우편)
운용현황보고서
통해 확인



당사 퇴직연금 홈페이지의
<http://www.truefriend.com/pension>
>연금>나의 퇴직연금>입금/지급>
부담금입금내역을 통해 확인

부담금 산정방법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



사용자 부담금 외 가입자 스스로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연 1,800만 원 한도)

부담금 납입시기 및 처리절차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부담금은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비율



참고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례

- 1 파산, 회생, 도산 등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정적 투자 원칙

투자성향별 자산구성 및 투자위험

투자성향이란 투자자가 추구하는 기대 수익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말합니다. 투자성향과 연령대, 노후 준비 정도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기본원칙



장기투자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수익 달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투자기간이 길수록 이자와 원금이 함께 재투자되는 복리효과가 더해져 자산가치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분산투자

투자위험과 기대수익률이 서로 다른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한 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면 일시금으로 투자할 때보다 시장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하는 상품 안내 —

DC, IRP제도 내 투자 가능 상품

원리금보장형 상품

- RP
- 정기예금(저축은행 포함)
- 원리금보장형 ELB
- 발행어음등

안정적인 금융기관 또는 정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채권형 펀드
- 채권혼합형 펀드
- 주식혼합형 펀드
- 주식형 펀드
- ETF, 상장리츠 등
- 채권

주식, 펀드등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

당사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pension) > 연금 > 퇴직연금상품에서 자세한 상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 위험

저위험/저수익

고위험/고수익



※ TDF(Target Date Fund)의 투자가능비율 100% 허용

(가입자의 가입기간 주식투자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비중 40%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20% 이내 등 적격집합투자증권 인정 기준 부합시)

[상품안내] ETF/리츠

ETF

ETF(Exchange Traded Fund)란?

특정 주가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매매가능하게 증권 시장에
상장한 펀드

리츠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거래 장점

- 1 인덱스 펀드보다 저렴한 수수료(ETF) : 퇴직연금 내 거래 시
매매수수료 없음
- 2 분산투자에 의한 리스크 저하
- 3 펀드보다 빠른 현금화 가능(2영업일 후 결제)
- 4 일반주식처럼 실시간 거래 가능

※ ETF: 위험자산투자한도 70% 적용,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미만은 적립금 100% 투자 가능

※ 리츠: 위험투자자산한도 70% 적용/제세금: KOSPI 증권거래세 0.00%,
농어촌특별세 0.15%, KOSDAQ 증권거래세 0.15%(매도시 체결금액 기준 징수)

거래 방법

홈페이지

연금>퇴직연금>상품매매/조회 변경>ETF/리츠/주식 매매

모바일

한투App>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투자> ETF/리츠 매매

디폴트옵션 제도 (사전지정 운용제도) 안내

사전지정 운용제도란

DC/IRP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 자동 운용

가입자의 의무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 하나의 옵션을 디폴트옵션으로 사전 지정

적용 절차

신규가입 또는 기존상품 만기 도래 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 대기기간 경과 후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



옵트인/옵트아웃

신규 가입 및 만기 도래 외에도 가입자가 원할 경우, 대기기간 없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 및 매도 가능

* 사전지정은 꼭 해야할까요? '23년 7월 12일부터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 재예치가 중단되어 현금성자산으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신다면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리 지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확인방법

홈페이지

연금>퇴직연금상품>디폴트옵션

모바일

한투App>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투자>디폴트옵션



운용방법별 수수료 체계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수료 체계

상품구분	이율적용 방식	상품관련 수수료	중도 해지시
원리금보장형(ELB)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단리	없음	상품만기와 해지시점에 따라 최초 약정이율에서 해지패널티가 차감된 이자와 원금이 지급
정기예금	단리	없음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중도해지율 적용

집합투자증권의 수수료 체계

펀드비용은 크게 보수와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비용이 일반펀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투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펀드비용		내용
보수 (정기적으로 부과)	운용보수	운용의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지급
	판매보수	계좌개설, 사후관리 등의 대가로 판매사에 지급
	신탁보수	은행 등의 자금보관회사에 지급
	사무관리보수	사무관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
수수료(1회)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내는 판매수수료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내는 후취수수료
	환매수수료	최소 가입기간 이전 환매시 부과되는 중도 해약수수료

※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하는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는 홈페이지의 사업자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별로 매수/매도 기준가 결정일 및 환매기준, 보수, 수수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품매수 전 투자설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추천포트폴리오 확인방법 참고

홈페이지

연금 > 퇴직연금상품 > 추천 퇴직연금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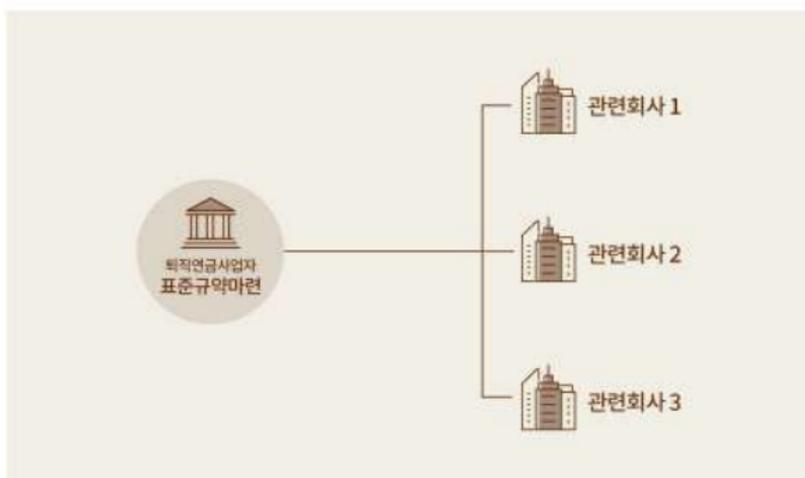
모바일

한투App>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투자정보> 추천포트폴리오

표준형 DC 안내

표준형 DC란?

-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DC 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는 하나의 사용자(회사)가 각각의 규약과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표준형 DC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용자들이 연합하여 동일한 표준규약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1 본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포함되는 사항들
- 2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3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
- 5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1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2 표준형 DC와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3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온라인서비스 이용방법



홈페이지 : www.truefriend.com/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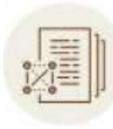
모바일 : 한투App

주요 메뉴



총연금자산현황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연금자산
및 수익률



퇴직연금상품정보

추천포트폴리오,
다양한 매수상품 제공



퇴직연금상품매매

부담금투자비용 변경, 교체매매,
ETF/리츠 실시간 거래



기타

연금 개시, 연금시물레이션,
펀드목표수익률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는 방법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카카오톡> 친구추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 DC/IRP 이벤트 안내
- IRP 거래 가이드 / 활용전략
- 내 연금수령액 계산
- ETF/ 상장리츠 상품 안내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유튜브 구독하기

www.youtube.com/c/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 퇴직연금 제도 교육
- 한투App 사용법
- 투자 전략 및 시황



퇴직연금 상담센터

1588-8844

(상담시간 08:00~17:00)

제도도입부터 퇴직처리까지 편리한안내

ONE-STOP 서비스!

- 퇴직연금 전반 상담
- 고객투자성향변경 및 정보변경 처리
- 상품운용지시변경 및 정보변경 처리
- 퇴직연금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 퇴직처리 서비스

※이 책의 내용은 당사 퇴직연금본부가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낸 것이나 그 정확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간행물은 고객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뿐,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간행물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2022.07.12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이후 법령의 개정 및 후속조치에 따라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단, DB형과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